



1라디오 (표준FM 97.3MHz)

KBS RADIO Dept 1. 18, Yoido-dong, Youngdeungpo-gu, Seoul, Korea

---

## 1. 프로그램 소개

KBS 1라디오 [KBS 열린 토론 (매일 저녁 7시20분-9시 생방송, FM 97.3)] 은

본격적인 의미의 라디오 시사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매체로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토론 프로그램이며,

온라인과 전화를 함께 연계해 일반인들의 여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kbs 보도본부, 現 kbs 심야토론 MC - 민경욱 앵커의 진행)

##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어떻게 볼 것인가? (가제)

### 3. 출연 패널 (의석순, 가나다순)

곽노현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배경내 상임활동가/인권교육센터 '들'

서희식 위원장/서울자유교원조합, 서울동일중학교 교사

오성삼 교수/건국대학교 교육학과

### 4. 출연안내

12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9시 00분

KBS 본관 4층 라디오 스튜디오 (7시까지 와 주시면 됩니다)

(국회의사당 방향, 여의도 공원 맞은편에 있는 KBS 건물입니다. 회색 건물이 바로 본관입니다.

차량을 갖고 오실 경우, 본관 건물 앞 계단으로 오시면 청경들이 VIP 주차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5. 연락처 :

작가 신은정

\_\_\_\_\_ **전영애** \_\_\_\_\_

PD 박수정

PD 이계창

6.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오프닝

---

---

---

---

JINGLE

---

---

---

---

출연자 소개

---

---

**토론 1. 조례안 추진 배경과 의미**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구성됐고, 이번에 결과물을 내놓게 된 걸로 아는데요.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우리 사회의 인권 성숙도에 비해 학교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우리는 사육이 아닌 교육을 원한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학생들의 외침이 이를 방증.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 열악한 학생인권 현실 : 자살, 초등학생이 학교가기 싫다고 생각할 정도.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고 학교생활이 힘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 만들기 :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

\* 구체화된 학생인권 기준 없어 교육현장의 갈등 증폭. 교사-학생, 교사-교사, 교사-학부모 사이의 갈등 만만치 않음. 교육당국의 지침도 현장에서 무시되는 상황도 잦음.

\* 학생인권이라는 것이 여타의 교육정책과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존재. 증진을 위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 실태조사, 실천계획 수립, 인권 교육 등.

\* 학생들 미성숙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성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인권 실태는 어떤 수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는 2009년 10월 27일 ~ 11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고,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기도 학생 2,020명(초등 934명, 중·고 1,086명)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6명 △경기도 거주 학생보호자 345명 등 총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체벌 : 초등 - 교사가 얼굴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손으로 때린다는 응답은 19.3%.

중등 - 체벌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해 거의 매일 수시로 경험한다는 답이 35.2%, 1주 2회 이상 경험이 26.4%

성적에 의한 차별이 57.3%

\*학생들은 인권 침해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중등학생 - 현재 학교운영, 교육환경 등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30.5%, 인권을 매우 많이 침해하고 있는 편이다 20.3%로 **50.8%가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응답.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구 분	빈도	유효 퍼센트
매우 보장	30	8.7
조금 보장	185	<b>53.6</b>
조금 침해	101	<b>29.3</b>
매우 침해	29	<b>8.4</b>
합 계	345	100.0

\*학생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에 언제 가장 인권을 침해 받는다고 생각 할까?)

=> 1위가 두발과 복장 규제. 2위가 자율적 학생 활동 보장과 의견 반영. 3위가 야자 등 강제 과잉 학습. 4위가 왕따 등 집단괴롭힘과 폭력. 5위가 체벌 금지.

<b>&lt;표 5&gt; 교육주체들의 우선 요구 학생인권 과제</b>					
	<b>1순위</b>	<b>2순위</b>	<b>3순위</b>	<b>4순위</b>	<b>5순위</b>
<b>학생</b>	두발·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b>교사</b>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복장
<b>보호자</b>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b>관리자</b>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 학생 인권조례안 추진 움직임이 이전에도 있었는지요?

\* 외국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에서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음.

- 미 캘리포니아주는 2000년 '학생 안전 및 폭력 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2007년에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실천은 일본이 대표적. 일본은 종합조례 형태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지자체는 2000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市)를 필두로 총 13곳에 이르며, 아동 참여나 학대방지 등 특별한 목적을 두고 아동 권리 조례를 제정한 곳도 16곳에 이룸. 그 외에도 시 정책을 추진하는 원칙으로 아동 권리 보장을 정해둔 지자체도 30여 곳에 이룸.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 권리 구제기구로서 옴부즈퍼슨(Ombuzperson) 또는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옴부즈퍼슨 또는 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부 통제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유럽에는 각국에 설립된 독립된 아동인권 관련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 줄여서 ENOC)도 설립되어 있음. ENOC의 구성원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아르메니아 등 29개국에 이룸.

\* 국내의 경우 - 광주가 2005년부터. 경남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동. 지자체 차원에서 인권 자치법을 만드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고, 올 3월 안산시가 채택한 '외국인 인권 조례'가 대표적.

- 인권 조례 추진에 대해서 학생과 학교관계자, 학부모의 공감대는 어느 정도나 형성됐다고 보십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높은 공감률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례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 학생 94.92%. 교사 65.96%, 학부모 82.03% 찬성. (사전협의회)

=> 조례연구용역 : 찬성 학생이 8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저희 철학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 자유와 책임이 함께 훈련되어야 하고, 책임은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정도도 학생 87.56%, 보호자 78.91%에 이르렀고 교사도 절반 이상 공감.

-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학교의 구체적 상은 어떻게?**

[권리 기준 제시] 자유와 참여/ 복지/ 안전

[증진계획] 인권실태조사, 홍보, 교육, 증진계획 수립,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등

[권리구제제도]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 학부모가 믿고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 폭력이 사라진 학교. 차별 받지 않는 학교.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 결정 능력과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의 삶이나 정서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은 격려받고 뒤쳐진 학생은 필요한 보살핌을 받는 학교. 교사와 학생이 서로 믿는 학교. 학교생활규정도 권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라는 요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

=> 무엇보다 학생을 잘 보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매질이나 압박지르기보다는 소통이 많아지는 학교로의 변화. 그만큼 교사들의 권한도 함께 확보되는 학교.

- 다른 나라의 사정을 살펴보자면, 각국의 학생 인권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나요?

\*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립의 차이도 있고, 일률적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다.

\* 독일의 한 주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관리자 등 모든 주체들의 공동의 약속으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

\* 프랑스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규정에 우리와 같은 각종 금지 규정이 빼곡한 나라는 없다. 이미 30-40년 전에 모두 거쳐간 부분.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유엔의 권고 : 자의적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 인권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권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교권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문조사 결과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답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물론 교사의 경우 교권 확립에 기여할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분들이 141명 중 89명, 절반 이상이 부정적. 관리자도 69명 중 43명으로 절반 이상이 부정적.

반면 학부모는 긍정적 의견이 128명 중 84명으로 65.3%. 학생은 177명 중 150명이 긍정적.

\* 이 같은 차이는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음. 교사의 인권과 직무상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사의 명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권이라면 그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예전에는 교사들이 ‘교장의 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 따라 수정. 교사들이 관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를 반영. 학생도 마찬가지. ‘교사의 명’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교권은 아닐 것. 학생인권은 합리적 교권관의 수립,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

-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개별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요?

: 이 말은 헌법이 존재해서 국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소리나 다름 없는 것. 도로교통법이 있어 개별 운전자의 자율권의 침해한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생 인권 존중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 법마저도 자율성 침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 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하위 규범인 것입니다.

: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강조하다 보면 교사 인권도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자율권을 내세워 교사들을 함부로 징계하거나 보직을 변경하거나 하면 교사들에게도 불리한 결과 초래.

: 만약 개별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이 대립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권의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 토론 2. 학생인권조례안 쟁점과 파장

-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체벌 금지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 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조례안대로라면 체벌은 전면 금지가 되는 겁니까?

\* 체벌 전면 금지. 어디까지가 체벌이냐는 우리의 문화적 성숙도에 달려있을 것.

- 교육적 목적의 처벌까지 조례로 금지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벌이라는 교육기능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체벌 금지는 계속된 요구였음. 유엔에서도.

\* 교육적이냐 그렇지 않냐는 교사에게 판단이 내맡겨져 있음. 교사 개인의 판단에 모든 걸 내맡겨둘 수 없음. 사후에 조치를 취한다 해도 그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주고 난 이후. 아동복지법, 고문수사 금지와 마찬가지로.

\*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 그것이 형사처벌이 될 만큼 심각한 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교육적 처벌을 얘기한 것이지/ 교육적 처벌을 권장하는 의미로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

\* 체벌 없이도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 중요. 체벌은 폭력의 악순환 가져옴. 처벌이 일시적 제재 수단은 되어도 교육적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선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음.

\*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는 교육당국의 방침이기도 함.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586명

○ **[체벌 대체 수단]** 체벌을 대체할 수단으로 상담전문가와 상담과 치료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2%,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체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93.2%. 또한 노동이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지도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높게 나타남. 학생체벌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첫 번째 과도한 교사업무 경감, 두 번째 과밀학급해소, 세 번째 학생 간 폭력금지, 네 번째 일제고사 등 학업성적위주의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 상벌점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체벌이 여전히 존재,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사라짐을 꼽음.

- 현재 경기도내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에는 어떤 규제



가 있나요?

=> 99.4%로 모든 중고등학교에 두발, 복장 규제가 존재. 강제이발을 하거나 머리에 물까지 뿌리는 등의 처벌 경험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강제이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두발 규제가 있기 때문. 규제와 폭력적 단속의 악순환.

- 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이들의 두발과 복장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는 것인가요? 또, 인권조례안의 내용대로라면,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 두발 길이만 자유.

\* 복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적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학생의 개성실현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 악세사리,

\*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 가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두발규제 → △복장규제 →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 과잉학습 → △단체기합 및 체벌 순으로 조사

\* 교사들도 두발 복장 규제 문제를 5순위로 꼽음.

<b>&lt;표 5&gt; 교육주체들의 우선 요구 학생인권 과제</b>					
	<b>1순위</b>	<b>2순위</b>	<b>3순위</b>	<b>4순위</b>	<b>5순위</b>
<b>학생</b>	두발·복장	자치활동	과잉학습	집단괴롭힘	체벌
<b>교사</b>	집단괴롭힘	상담 등 복지	자치활동	과잉학습	두발·복장
<b>보호자</b>	집단괴롭힘 / 상담 등 복지		징계	자치활동 / 과잉학습	
<b>관리자</b>	자치활동	인권교육	문화권	집단괴롭힘	체벌

- 복장과 두발 자율화가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학생들의 탈선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논란이 큰데요?

- 교복이나 복장 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복장 자율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드러나고,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조항도 찬반이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몰릴 것이다.

\*공교육 해체가 가속화 될 것이다.

\*또 참을성을 기르거나, 조직과 규정(율)에 적응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인데 이러한 교육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 **[강제수업]** 정규수업외의 특기적성수업, 방과후학교 수업, 자율학습 참여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강제적인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자유롭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6.9%로 교사들도 학생들의 학습의 자유 보장에 긍정적.

- 휴대폰 소지에 대한 논란도 큰데요. 일부지역에서도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09년 4월 경기도 교육위 자료 : 도내 고등학교 - 규정 있는 학교가 248개, 없는 학교가 119개. 생활규정에 소지 금지된 학교는 95개교. 일주일 압수는 104개교, 1개월은 46개교.

도내 중학교 - 규정 있는 학교가 411개, 없는 학교가 94개. 소지 금지가 283개교. 1주일 압수가 185개교, 1개월은 61개교.

- 학생들이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학생들이 학생회 등을 통해서 현재도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그 밖에도 학내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조항에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학생이니 만큼 아직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되기 전인데, 정치적으로 아이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교내에서 집회를 열게 될 경우, 그 사안은 당연히 학교 안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나. 학내 집회가 우려된다면 가장 빠른 예방책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들이 믿고 참여할 만한 절차가 완비되면 됨.

\* 정치적으로 휘둘린다는 주장은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본 것. 사실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고 누군가 집회를 열자고 해도 학생들이 안 하지 않겠나.

---

---

### **토론 3.**

-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조례제정만으로 아이들의 인권이 지켜지기는 힘들텐데요.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전망과 적용까지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번 논의로 인해서 교권수호와 교원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도 함께 제정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그밖의 정책 제언과 마무리 발언

---

---

클로징

---

---